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4호)

·심사보고서

1. 삼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2. 2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3. 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3. 19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사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골자

-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마련(안 제7조)
 - 우리군의 여전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 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안 제14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규제강화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 공동주택 범위 확대 등 현실 여건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 또한 환경부에서 시달린 준칙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4. 3.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